학원등록말소처분취소 소송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대법원
사건번호	2020두○○○○○ [3심]	사건유형	영업면허등록인가
원 고	주식회사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	피 고	인천광역시○○교육청교육장
판결선고일	[3심]2020. 11. 26. 심리불속행기각	비 고	[1심]2018. 12. 20. 원고패 [2심]2020. 06. 24. 항소기각
사건개요	❍ 원고는 인천시 ○○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, 2017.09.14. **뉴스 등 언론기관에서 원고의 학원이 미인가 국제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, 피고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.09.15.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함. ❍ 피고의 특별지도 점검 실시결과 원고는 학원 운영 형태 및 외국인 강사 채용 등에 있어 학원법의 12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등록말소(벌점 124점)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받음. ❍ 피고는 2017.09.26. 원고에게 등록말소 관련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7.10.19. 청문을 통해 원고가 제출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학원법 위반 항목을 9개(벌점 96점)로 변경하여 2017.11.14., 원고에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고,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상고를 기각한다. 2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		
이 유	❍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
2심 판결요약	❍ 행정조사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- 주요 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에 이 사건 학원에 관한 문제가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피고가 행정조사에 나설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,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실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 등에 나설 우려가 있었다고 보임. 따라서 이 사건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'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'에 해당하므로,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지도·점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. ❍ 이 사건 위반사항 중 '기타 학원 불법운영' 부분 관련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- 이 사건 위반사항 중 '기타 학원 불법운영' 부분은 처분의 법령상 근거 및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,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'기타 학원 불법운영' 부분에 해당하는 벌점 15점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가 모두		

	인정되는 이상, 이 사건 학원의 벌점은 96점에서 81점으로 줄어들게 될 뿐임. 이는 조례행정규칙 제23조 제1항 [별표6]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는 등록말소 기준인 66점을 훨씬 초과하고,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피고의 재량권의 일탈·남용한 행위여서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. 결국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음.
2심 결론	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